

『한국문화인류학』 간행규정

2008년 5월 1일 제정
2009년 4월 1일 개정
2010년 1월 21일 개정
2011년 11월 26일 개정
2012년 8월 25일 개정
2015년 7월 17일 개정
2017년 6월 23일 개정
2019년 11월 29일 개정
2020년 7월 14일 개정
2020년 11월 29일 개정
2021년 4월 23일 개정

<총칙>

1. 본 규정은 한국문화인류학회가 간행하는 『한국문화인류학』(영문명: Korean Cultural Anthropology)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편집위원회>

1. 『한국문화인류학』 간행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한국문화인류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편집간사 1인을 둔다.
3.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집기획업무의 총괄 관리 (2)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3) 편집기획업무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편집기획 관련 규정의 개정 (5) 편집간사 임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편집기획업무에 속하는 사항 (7)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집방향, 연간 편집계획 등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편집기획 관련 업무의 실행. (2)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기고문의 심사 및 심사의뢰, 출판, 디자인 등 제반 업무. (3) 기타 일상적인 편집기획 업무.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역할.

6. 편집위원장은 임기 중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편집위원은 임기 중 투고가 가능하지만,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원고 제출 및 심사>

1. 『한국문화인류학』은 1년에 3회(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 출판하며, 여기에 제출하는 원고는 독창성을 가지는 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원고의 장르는 연구논문, 연구동향, 서평 등을 포함하며, 제출된 원고에 특별히 장르를 명기하지 않으면 연구논문으로 간주한다. (1) 연구논문은 경험적 자료(현지조사자료 또는 문헌자료)에 기반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논문, 또는 특정 주제나 연구동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심층분석이 이루어진 논문을 의미하며, (2) 연구동향은 학문적으로 새롭거나 의의가 있는 연구 주제를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서평은 편집위원회가 전년도에 출판된 인류학적 학술 단행본 중 일부를 선정하여 서평자를 위촉하여 게재하거나, 서평을 희망하는 서평자가 직접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서평 게재를 신청하여 투고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 (<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투고 시 저자 모두는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투고 당시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공동 저자에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 등)이 포함될 경우, 저자는 이를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배경, 공동 저자가 논문 작성에 기여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저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모든 공동저자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6. 투고 시 저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연구윤리 자가 진단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저자는 이를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공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의거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제척, 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저자는 이를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사유의 적절성을 판단한 후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7. 원고의 제출과 심사는 학회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koanthro.jams.or.kr>)을 통해 이루어진다. 저자는 학회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후, 직접 접속하여 투고해야 한다.
8. 모든 원고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초록은 논문의 목표, 연구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연구의 결론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국문초록은 500자 이상 800자 이내,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상 40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또한, 각 초록의 제목 위에 <주요 용어>와 <Key Words>를 표기하고 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5~7개 정도를 제시한다.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의한 “특집”의 경우에는 각 특집의 성격에 따라서 국문초록, 영문초록과 주요 용어 제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연구동향과 서평의 경우에는 초록과 주요 용어는 필요 없음). 편집위원회는 초록 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수정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9. 심사를 위한 원고 제출은 1년 내내 가능하다. 매년 1호(3월 30일 출판)에 게재를 희망하는 저자는 원고를 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2호(7월 30일 출판)에 게재를 희망하는 필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원고게재확인서, 원고를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3호(11월 30일 출판)에 게재를 희망하는 저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원고게재확인서, 원고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0. 연구논문 투고자는 원고와 함께 심사료 6만원을 학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1. 제출된 연구논문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들이 익명으로 심사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대학교의 경우 동일 학과) 심사자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게재’ (A), ‘부분 수정 후 게재’(B), ‘전면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 중의 하나로 판정을 내린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제기의 타당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의 독창성 (4) 학문적 기여도 (5) 논술구조와 체계 (6) 관련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7) 집필원칙 적용 충실도.
13. 편집위원회는 심사자 3인의 심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정 기준 하에 최종 판정의 권한을 갖는다.(다음 표 참조).

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판정
A	A	A	수정 없이 게재	B	B	B	부분 수정 후 게재
A	A	B	수정 없이 게재	B	B	C	부분 수정 후 게재
A	A	C	부분 수정 후 게재	B	B	D	부분 수정 후 게재
A	A	D	부분 수정 후 게재	B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A	B	B	부분 수정 후 게재	B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A	B	C	부분 수정 후 게재	B	D	D	게재불가
A	B	D	부분 수정 후 게재	C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A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C	C	D	전면 수정 후 재심
A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C	D	D	게재불가
A	D	D	게재불가	D	D	D	게재불가

* 재심 또는 게재 불가 여부를 결정

- A: 수정 없이 게재
- B: 부분 수정 후 게재
- C: 전면 수정 후 재심
- D: 게재불가

14.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저자는 주어진 기한 안에 수정된 원고와 수정설명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수정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정 후 제출한 최종 원고가 논문 집필 요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원고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의 서지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을 경우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 후 당호에는 게재하지 아니하며 다음 호에 전면 수정된 원고에 대한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15. ‘전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은 14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저자가 불복할 경우, 한 차례 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을 재논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합의된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한다.
16. 게재가 결정된 원고라도 당해 호수의 원고가 넘치는 경우, 또는 마감 날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최종 수정원고를 접수한 직후 원고작성자에게 통고된다.

17.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 모두는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게재 당시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 및 원고 게재료>

1. 게재되는 모든 원고(서평 제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는다. 단, 저자(들)가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의 전임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 원고 게재료를 면제하고 추가 원고 게재료만 받는다.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의 전임이면, 기본 원고 게재료와 추가 게재료를 모두 받는다.
2. 원고 게재료는 원고매수(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초록 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1) 200자 원고지로 150매 이내는 기본 게재료 15만 원을 받는다.
 - (2) 원고매수가 151매 이상 170매까지는 20만 원을 받는다.
 - (3) 원고매수가 171매 이상 200매까지는 25만 원을 받는다.
 - (4) 원고매수가 200매를 초과하는 원고는 초과분 1매 당 3천 원의 게재료를 더해 받는다.
3. 연구비를 받아 작성된 원고로서 연구비를 받은 사실을 출판논문에 적시해야 하는 원고는 20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받는다.
4.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 논문 저작권>

1. 출판되는 논문에 대하여 인터넷 유통을 포함한 출판 소유권 및 저작권은 한국문화인류학회에 귀속된다.
2.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저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게재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날인 후 원고 최종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간행규정의 제·개정>

1. 본 간행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편집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전의 간행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문화인류학』 연구윤리 규정

2007년 11월 16일 제정
2014년 11월 14일 개정
2021년 4월 23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인류학』의 논문 심사와 게재 과정, 그리고 연구윤리 심의 과정에서 편집위원회, 원고(연구논문, 연구동향, 서평 등의 모든 형태의 글을 포함)의 투고자(이하 투고자, 연구자 혹은 저자), 심사위원,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자가 지켜야 할 윤리와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윤리와 정직성)

- ①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의 과정과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정직함은 연구의 구상, 계획, 연구비 지원, 공정한 보상, 자료수집, 저술과 출판 등 연구의 과정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정직함을 말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부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저술의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통용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④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자는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연구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⑦ 연구자는 논문의 기반이 되는 연구와 집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도가 중요하게 인정되는 연구자만을 공동저자에 포함해야 한다.
- ⑧ 연구자는 특수 관계인의 공동저자 등재 여부와 그 배경을 편집위원회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⑨ 연구자는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 ⑩ 연구자는 -심사위원 선정 시 고려될 제척, 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윤리와 성실성)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대학교의 경우 동일 학과) 심

사자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그 저자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윤리와 공정성)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 자신이 해당 논문의 심사에 책임자가 아니거나,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특정한 학문적 입장이나 시각 등을 넘어서서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면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 표절과 중복게재)

- ①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일컫는다.
- ② 표절의 정의: 투고 또는 게재 논문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1. 학술지, 단행본, 전자저널 등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저술 또는 저술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2. 이미 출간된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 기타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③ 중복게재의 정의: 투고 또는 게재 논문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 1. 이미 출간된 논문이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인 경우.
 -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3. 기타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와 연구윤리의 심의)

- ①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⑧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징계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 ②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③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지원기관, 기타 연구 관련 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④ 위원회는 제6조에서 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제7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문화인류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 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부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따른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칙 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